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제정 1995-12-04 주체84(정무원 결정으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화폐자금 조성, 분배, 리용과 관련한 경영활동을 통일적인 부기계산 절차와 방법에 맞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부기계산은 경영활동과정에 재정상태의 변동과 경영활동의 결과를 화폐적으로 계산하고 기록하며 정리하는 경영계산이다.

제3조

부기계산년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4조

부기문건의 글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부기문건의 글을 외국어로 표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이 있어야 한다.

부기문건에는 부기계산장부와 부기결산서, 전표가 포함된다.

제5조

부기계산은 부기계산장부와 전표에 하여야 한다.

부기계산장부와 전표의 양식은 중앙재정기관이 통일적으로 정한다.

제6조

부기계산은 복식기입으로 한다.

복식기입은 경영거래를 부기계산자리에 올릴 때 두개의 계산자리에 서로 맞세워 다같이 올리는 방법이다.

제7조

부기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외화로 경영계산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시기 무역은행이 정한 외화 교환 및 결제 시세에 따라 계산된 조선원을 겹쓰기 하여야 한다.

제8조

부기문건은 부기계산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게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부기문건은 문건의 중요성에 따라 5년, 10년, 20년, 영구 보존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공화국령역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이 포함된다.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외국기업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은 기업의 재정부기부서가 맡아하며 그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재정기관이 한다.

제2장 부기계산원칙과 부기계산자리 및 부기계산방법

제12조

부기계산원칙과 부기계산자리 및 부기계산방법에 맞게 부기계산을 하는것은 경영계산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차적 요구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부기계산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부기계산자리를 옳게 정하며 부기계산방법에 맞게 부기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결과를 사실대로 진실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2. 부기계산 수법과 절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3. 재정상태와 관련한 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별하고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4. 부기계산년도안에서 부기계산방법을 변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부기계산자리는 재산, 채무, 자본의 증감과 수입, 지출을 계산하는 수단이다.

제15조

부기계산자리의 순위설정과 계산자리번호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다.

부기계산자리에는 재정상태표계산자리(재산계산자리, 채무계산자리, 자본계산자리)와 손익계산표계산자리(수입계산자리, 지출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재산, 채무, 자본 계산자리는 재정상태표에 반영하며 수입, 지출 계산자리는 손익계산표에 반영한다.

제16조

부기계산자리의 기입은 계산자리의 항목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산계산자리의 기입은 재산의 증가와 잔고를 차방에, 재산의 감소를 대방에 한다.

2. 채무 및 자본 계산자리의 기입은 채무 및 자본의 증가와 잔고를 대방에, 채무 및 자본의 감소를 차방에 한다.

3. 수입계산자리의 기입은 수입의 증가와 잔고를 년도초로부터 결산기말까지 루계액으로 대방에 한다.

4. 지출계산자리의 기입은 지출의 증가와 잔고를 년도초로부터 결산기말까지의 루계액으로 차방에 한다.

제17조

재산의 계산은 류동재산, 고정재산, 투자재산, 연상재산으로 갈라한다.

류동재산에는 구입 및 저장, 생산 및 판매, 결제 단계에 있는 재산이 포함되며 고정재산에는 유형의 고정재산과 무형의 고정재산이 포함된다.

투자재산에는 1년 안에 회수할 수 없는 유가증권, 채권, 전불비용 같은 것이 포함되며 연상재산에는 창설비, 조업비, 사채발행비, 개발비, 시험 및 연구비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18조

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의 계산방법은 중앙재정기관이 정하며 감가상각금은 달마다 계산하여 원가 또는 류통비에 넣는다.

제19조

재산의 구입가격은 취득가격 또는 취득가격에 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류동재산 가운데서 물자재산가격은 취득가격으로만 계산하며 물자구입경비는 따로 계산한다.

고정재산가격은 취득가격에 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20조

류동재산 가운데서 물자재산의 소비가격은 취득가격 또는 평균가격으로 한다.

제21조

채무의 계산은 1년까지의 단기채무와 1년이 넘는 장기채무로 갈라한다.

단기채무에는 단기대부금, 단기수형채무, 구입채무, 내줄 로임, 납부할 세금, 납부할 사회보험료, 전수금, 재산보험보상금, 기타 채무 같은 것이 포함되며 장기채무에는 장기대부금, 사채, 장기수형채무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22조

자본의 계산은 자본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자본금은 현물재산, 화폐재산을 투자할 때마다 계산한다.

2. 현물재산의 투자가치는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합영기업의 예비기금은 등록자본금의 일정한 몫이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리윤의 일정한 비률로 적립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4. 기업의 기금은 합잉기업인 경우 리사희가 결정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합작기업인 경우 공동협의회가 정한 비률로 계산한다.

5. 당해년도 리윤은 류동고일람표의 재산총액에서 채무 및 자본의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6. 처리하지 못한 리윤은 당해년도 리윤에서 분배처분된 리윤을 공제한 나머지 리윤으로 계산한다.

제23조

수입의 계산은 제품판매수입과 건설물 인도수입, 기타 수입으로 갈라 한다.

수입은 제품판매금액이 입금되였거나 받아야 할 금액이 포함된다.

제24조

제품판매수입은 판매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주문판매인 경우에는 제품을 주문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출하한 것만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

2. 위탁판매인 경우에는 제품을 위탁받은자가 판매실현한 것만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

3. 견본판매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데 따라 출하한 것만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

4. 예약판매인 경우에는 받은 예약금가운데서 예약상품을 인도한 것만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

5. 할부판매인 경우에는 자금회수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이 되였을 때에만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

제25조

제품판매수입은 제품별 판매량에 제품별 실지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할부판매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26조

건설물인도수입은 공사진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건설공사가 완공되였을 경우에는 완공된 건설물을 당사자에게 인도한것만 건설수입으로 한다.

2.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건설수입으로 한다.

제27조

기타 수입은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지는 수입으로 계산한다.

제28조

지출의 계산은 판매원가, 건설원가, 기타 지출로 갈라 한다. 판매원가는 기초원가와 생산원가(실적원가)를 합하고 기말원가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건설원가는 건설공사완공원가 또는 건설공사진행원가로 계산한다.

원가항목과 항목별 비용지출계산방법은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다.

제3장 부기결산

제29조

부기결산은 결산기간의 재정상태와 경영활동의 재정적결과를 확정하는 종합적인 재정총화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기간의 경영활동과 재정상태를 분석총화하고 기업의 재정관리를 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0조

부기결산은 월, 분기, 년도별로 하여야 한다. 월부기결산을 할 경우에는 종합계산자리류동고일람표를, 분기 및 년도 부기결산을 할 경우에는 부기결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31조

부기결산서는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본표로 만들며 그를 분석하는 부표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상태표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재산면과 채무 및 자본면으로 갈라 종합하고 대조하는 균형표이다.

손익계산표는 기업의 일정한 기간 경영활동결과를 수입과 지출 항목별로 갈라 종합하고 대조하여 손익을 확정하는 표이다.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를 분석하는 부표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데 따라 만들어야 한다.

제32조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는 종합계산자리원장의 부기계산자리잔고를 그대로 올리는 방법과 가감하는 방법을 결합하여 작성한다.

제33조

결산리윤은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에 각각 계산하며 그 리윤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34조

부기결산서는 기업책임자와 재정부기책임자가 련명수표하여 부기검증사무소의 부기검증을 받은 다음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부기결산서는 정한기간(분기부기결산서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년간부기결산서는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말) 안에 해당 세무기관에 내야 한다.

제4장 부기계산에 대한 감독통제

제36조

중앙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부기계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7조

중앙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부기계산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5,000원~1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